

심의결과 원안대로가결

의안번호	회의회수	회의일자	제 의 자
8	1	1981. 2. 19	총재 김 준 섭

의 안 "한국은행 여신업무이율" 일부 개정

의결사항 / 한국은행 여신업무이율을 다음과 같이
일부 개정한다

구분	이 율	
	현 행	개 정
제 입 어 음	주택적립예치 발행,	적립예치 발행(안도배서 및
	안도배서, 인수어음:	인수 포함) 또는
	년 15.5%	수취어음: 년 15.5%
	기타입제 발행, 안도배서,	기타어음: 년 15.0%
	인수어음. 년 16.0%	

2 실시일자: 1981. 3. 2

3 경과조치; 1981. 2. 28 이전에 증빙거
신이 취합한 상업어음에 대한 채발인은
어음기일까지 증빙이율을 적용한다.

제의관계
법구조함

한국은행법 제 22 조

제의목적

상업어음관리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한국은행
수입어음개발인 이율을 조정하고자 본권 전
거과 같이 의결할 것은 제의함

참고사항

1 제의관계 법구조함

한국은행법 제 22 조

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 29 조에 규정
된 여신업무에 관한 이율을 정한다

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 29 조에 규정
된 범커백에서 여신업무에 관한 이율

포근과 거정을 경할 수 있다.

2. 정부들

가. 한국은행 주요 여신업무 이견

나. 한국은행 대출금 추이